



목차

법인세(CIT).....3

2025년 2월 10일 자 정부령 제 20/2025/ND-CP 호 –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관련 3

부가가치세(VAT)4

2024년 11월 26일, 제 48/2024/QH15 호 법률 – 국회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법 4

2025년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PIT)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2025년 4월 2일 자 정부령
제 82/2025/ND-CP 호 9

기타 사항..... 15

2024년 12월 23일에 발행된 세금 등록에 관한 86/2024/TT-BTC 호 circular 는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15

2025년 2월 28일 자 국세청 공식 서한 제 916/TCT-CS 호: 시험 생산 제품 판매 수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 인센티브 적용 시점..... 18

2025년 2월 10일 자 롱안 세무국에서 발행한 공식 서한 번호 496/TCT-CS 는 세관 당국의
세무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수입세에 관한 것입니다..... 19

투자 프로젝트 이전 시 수입 물품에 대한 VAT 정책에 대한 지침에 관한 세무총국(GDT)이
발행한 2025년 2월 28일 자 공식 서한 번호 137/PCT 19

재무부(MOF)가 보세창고로의 내륙 수출 상품에 대한 VAT 정책에 관한 지침에 관해 발행한
2025년 2월 17일 자 공식 서한 번호 1872/BTC-TCT 20

롱안 세무국이 건설 기간 동안 토지 및 인프라 임대 비용에 대해 발행한 2025년 2월 12일 자
공식 서한 번호 549/CTLAN-TTHT 20

2025년 2월 20일 자 푸옌성 세무국에서 발행한 공식 서한 번호 473/CTPHY-TTHT(Facebook
및 Google 광고 비용에 대한 세금 신고)..... 20

2024 년 12 월 18 일 자 룡안무국에서 발행한 발행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는
것에 관한 공식 서한 번호 5772/CTLAN-TTHT 21

법인세(CIT)

2025 년 2 월 10 일 자 정부령 제 20/2025/ND-CP 호 –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관련

2025 년 2 월 10 일 정부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를 규정한 2020 년 11 월 5 일 자 정부령 제 132/2020/ND-CP 호(“정부령 132”)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정부령 제 20/2025/ND-CP 호(“정부령 20”)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정부령은 2025 년 3 월 27 일부터 발효되며, 2024 년 법인세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령 20 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개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1. 특수관계자 유형

- 지분 투자 또는 지배 관계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제외됨 (정부령 132, 제 5 조 제 2 항 d 호 개정 및 보완)
- 독립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독립지점은 특수관계자 관계에 포함됨 (정부령 132, 제 5 조 제 2 항 k 호 개정 및 보완)
- 특수관계자는 「금융기관법」 및 그 개정 또는 대체 법률에 따라 정의된 금융기관의 계열사로 확대됨 (정부령 132, 제 5 조 제 2 항 m 호 개정 및 보완)

2. 대출 이자율 관련 경과 규정

시행령 132 호에 따라 2023 과세연도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었으나, 시행령 20 호에 따라 2024 과세연도부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 3 자 금융기관 차입 이자비용에 대한 경과규정

- 회사가 2024 과세연도 동안 시행령 20 호상 어떤 특수관계인과도 거래가 없는 경우, 2023 과세연도 종료 시점까지 사용되지 않은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은 5 년에서 경과된 과세연도를 제외한 기간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비용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2024 과세연도 동안 시행령 20 호상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경우, 2023 과세연도 종료 시점까지 사용되지 않은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은 5 년에서 경과한 과세연도를 제외한 기간내에서 공제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2024 과세연도 동안 시행령 20 호상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고,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총 이자비용이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30%를 초과하면, 해당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해당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5 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정부령 20 제 1 조 제 2 항은 정부령 132 제 21 조 제 2 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세무 관리 목적상 금융기관과의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에 대해 세무당국이 요청할 경우, 관련 당사자 정보 제공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합니다.

부가가치세(VAT)

2024 년 11 월 26 일, 제 48/2024/QH15 호 법률 – 국회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법

납세자에 대한 규정 보충

새로운 부가가치세 법은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련된 납세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 내의 조직 및 개인과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기반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거래소 및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며 결제 기능을 갖춘 조직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자로 활동하는 사업자 가구 및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법은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10% 세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 변경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추가:

-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단순 가공 또는 개별 생산, 어획한 제품을 판매하는 조직과 개인이 판매하는 경우) 판매 및 식재료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 금융리스 회사가 금융리스용으로 수입한 재화가 비과세 구역 내 기업에 리스되는 경우.
-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예방 및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품, 그리고 국경 주민의 생산 및 소비를 위해 매매 및 교환되는 재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품목을 5% 부가가치세율로 이동:

- 비료;
- 해양 및 국경 지역의 어선; 농업 생산을 위한 특수용도 기계 및 장비;
- 가공되지 않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및 어업 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기업과 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기업 및 협동조합(상거래 목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을 10% 부가가치세율로 이동:

- 증권 등록서비스, 증권 시장 조직 서비스(주식 거래소 또는 증권 거래소); 기타 증권 관련 업무.
-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우편,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 동물원, 식물원, 공원, 거리 녹지, 공공 조명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에 대한 추가 규정(오류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벌금은 별도로 과세)

- 재화의 경우,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용 권한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이 결정되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이 결정되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부가가치세(VAT) 0%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수출 재화에는 베트남에서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되어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재화; 비과세 구역 내 조직에게 판매되어 비과세 구역에서 소비되며 수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가 포함됩니다.
- 수출 서비스에는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어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비과세 구역 내 조직에게 직접 제공되어 비과세 구역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개정 및 보충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은 공급대가의 현금 지급에 대한 상한선 금액기준을 제거하였으며, 상세규정은 정부령이나 추가규정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매입부가가치세 금액에서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 오류가 발생한 과세 기간에 수정신고가 세액 증가나 환급 세액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오류 기간 전체를 재수정 신고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 오류를 발견한 과세 기간에 수정신고가 세액 감소를 초래하거나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는 매입부가가치세 금액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해당 오류발견시점에 수정신고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

법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세금계산서의 매매에 참여하거나 불법 세금계산서 또는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
- 허위 거래를 창출하는 행위;
- 사업 중단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합법적인 경우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요구된 대로 전송하지 않는 행위;
- 세금계산서 정보 시스템을 허위로 접근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 세금 회피 또는 환급 부정취득을 위한 특수관계자 간의 공모 행위.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일반 조건 보충:

판매자는 환급을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규정에 근거해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매출부가세 납부를 매입부가세의 환급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수입된 후 다른 나라로 수출된 상품매출재화에 대해서는 수입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분배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수출 재화 및 서비스의 분배비율은 수출재화 및 서비스의 매출/해당 환급 기간의 총 과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매출로 나눈 비율이며 이를 적용하여 매입부가세를 분배됩니다.
-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환급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가 이전 기간의 수출 재화 및 서비스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는 다음 기간에 환급대상 매입부가세에서 여전히 제외된 후 수출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투자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는 확장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 투자 프로젝트나 투자활동의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 프로젝트나 투자 활동의 완료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익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시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한 수익, 금융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투자 프로젝트의 원자재 처분 수익은 수익발생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업 소유권 이전, 기업 전환, 합병, 통합, 분할, 분리 또는 운영 종료를 사유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폐지됩니다(단, 해산 또는 파산의 경우는 제외).

새로운 부가가치세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PIT)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2025년 4월 2일 자 정부령 제 82/2025/NĐ-CP 호

정부령에 따르면, 2025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은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매월 신고하는 경우) 및 2025년 1분기, 2분기의 소득세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2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9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기업이 정부령이 시행되기 전에 2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및 4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 2025년 5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 2025년 6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 2025년 1분기(분기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2025년 2분기(분기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참고: 위 규정은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부령 제 3 조에 명시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과 조직에 대해 2025 년 법인세(CIT) 첫 번째 및 두 번째 분기의 예납법인세 납부 금액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됩니다.

연장 기간은 세무 관리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 종료일로부터 5 개월입니다.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PIT) 납부 기한 연장은 이 정부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명시된 경제 부문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가구와 개인에 대해 2025 년 발생하는 세금에 적용됩니다. 해당 가구와 개인은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부령에 따르면 2025 년 발생하는 50%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 또는 유관 당국의 결정 또는 계약에 따라 연간 토지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임대하는 기업, 조직, 가구 및 개인에 해당합니다. 연장된 납부 기한은 2025 년 5 월 31 일부터 6 개월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2025 년 3 월 20 일 정부령 제 70/2025/NĐ-CP – 2020 년 10 월 19 일 정부령 제 123/2020/NĐ-CP 의 개정

2025 년 3 월 20 일, 정부는 2020 년 10 월 19 일에 발효된 정부령 제 123/2020/NĐ-CP 를 개정하고 보충하는 정부령 제 70/2025/NĐ-CP 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5 년 3 월 28 일, 국세청은 정부령 제 70 호의 새로운 내용을 담은 공식서한 제 348/CT-CS 를 발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정부령 제 70 호에서 중요한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업데이트입니다.

규제 대상 추가 (제 2 조 및 제 8 조 제 1 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대상에 대한 규정 보충:

"베트남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공급자;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는 외국 공급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 2 조 및 제 8 조 제 1 항).

세금계산서 종류 보충 (제 8 조)

(i)수출 가공 기업의 세금계산서 종류에 대한 규정 보충: 수출 가공업 외의 다른 비즈니스 활동도 겸업하는 EPE(수출 가공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직접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sale invoice 를 사용하고, 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ii)전자 매출청구서(commercial invoice) 보충: "전자 매출청구서는 해외로 재화수출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직 및 개인(수출자)가 사용하며, 수출자는 세무 당국에 전자 매출청구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 매출청구서는 본 정부령 제 10 조에 명시된 내용 요구 사항과 제 12 조에서 규정한 세무 당국의 표준 데이터 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세무 당국에 전자매출청구서용 데이터를 전송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Sale invoice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대한 규정 보충 (제 9 조)

(i)수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보충 (수출 가공 포함): 전자 매출청구서 또는 전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sale invoice 를 발행하는 시점은 판매자가 정하되, 물품이 세관신고를 통과한 날짜로부터 1 영업일내에 발행합니다 (제 1 항).

(ii)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보충: 국내 서비스발행시점과 유사하게, 서비스 완료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며,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제 2 항).

(iii)특정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제 4 항)

- **대량으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시:** 기업과 고객, 파트너 간의 데이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양 당사자 간의 데이터 조정이 완료된 시점이며, 이 시점은 매출발생 후 익월 7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서비스 제공 후 7 일 이내 또는 합의된 기간이 끝난 시점 후 7 일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 텔레비전 광고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은행 서비스(대출 활동 제외), 국제 송금, 증권 서비스, 전자 복권, 도로 사용료 징수 등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재무부의 지침에 따른 기타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 **소매업 및 음식 및 음료업의 당일세금계산서 발행 규정 삭제:** 모든 회계 활동이 본사에서 합산회계처리되고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만 하는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업 및 음식 및 음료업에 대해서는 이전의 당일내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에 대한 규정 보충 (제 10 조)

(i)**상품 및 서비스 명칭 보충**: 음식 및 음료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음식 및 음료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운송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차량 등록 번호와 이동 경로(출발지 및 도착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운영되는 운송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운송된 물품의 명칭과 발송인의 이름, 주소, 세금코드 또는 개인 식별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i)**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규정 보충**: 전기, 수도, 통신 서비스, IT 서비스, 방송, 우편 및 배송 서비스, 은행, 증권 및 보험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을 보충하며, 이는 데이터 조정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자는 항목별 목록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i)**세금계산서 발행 시간과 디지털 서명 시간이 다른 경우에 대한 규정 명확화**: 디지털 서명 시간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간이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의 디지털 서명 및 세무 당국에 데이터 전송 시간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영업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며, 구매자는 적절한 형식을 갖춘 완전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iv)**전자세금계산서에 전체 세부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법인고객이 아닌 개인 고객에게 판매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납세코드 또는 디지털 서명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처리 규정 개정 (제 19 조)

(i)오류 발행된 세금계산서 취소 규정 삭제

- 현재 규정: 2020 년 정부령 제 123/2020/NĐ-CP 에서는 판매자가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어 구매자에게 발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오류가 있는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디지털 서명과 함께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규정은 삭제됩니다.

(ii)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또는 교체하기 전에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 보충:

- 현재 규정인 2020 년 정부령 제 123/2020/NĐ-CP 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거나 교체발행할 때 서면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정에 의거하면, 구매자가 기업, 경제 조직, 기타 조직, 사업 가구 또는 개인인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오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개인인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지하거나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합니다.

(iii)동일월에 동일 구매자에게 발행된 다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체하거나 수정하는 규정 보충.

(iv)특정 경우에 기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 보충 (제 4 항):

- 전자세금계산서가 판매된 재화나 서비스가 오류가 없지만, 실제 결제나 정산 과정에서,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또는 수량에 변화가 있을 경우, 판매자는 그 차액을 정산을 통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최종거래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감소는 부(-)로 기록하고, 증가한 금액은 양(+))으로 기록).
- 매출할인액이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이미 판매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할인 금액은 마지막 거래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나 후속거래기간의 세금계산서에서 조정해야 하며, 할인 금액이 마지막 거래 또는 후속거래기간에 기록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정된 금액 및 세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목록을 함께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재화나 서비스 반환 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 재화 반환 시: 구매자가 모든 재화 또는 일부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구매한 재화의 가치가 변경되는 교환 포함), 판매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엔, 구매자가 재화 반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판매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정부령 제 70 호는 202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타 사항

2024 년 12 월 23 일에 발행된 세금 등록에 관한 86/2024/TT-BTC 호 circular 는 2025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계약자의 세금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13 자리 TIN(세무코드) 발급:** "세금 원천징수 및 납부가 베트남 당사자에 의해 대행된 외국인계약자 및 하도급 계약 목록" (양식 번호 04.1-ĐK-TCT-BK)과 "세금 등록 신고서" (양식 번호 04.1-ĐK-TCT)가 수정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으로, 베트남 당사자가 요청받은 경우엔, 외국인계약자에게 13 자리 TIN 을 발행할 수 있는 선택란이 포함되었습니다.
- **여러 외국인계약자가 동일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을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려는 경우:** 각 계약자는 별도의 10 자리 세금 식별 번호(TIN)를 발급받게 됩니다 (참조: 제 5 조 제 4 항 d 항목).

- **종속회계조직에 대한 세금 등록 서류 제출 의무 제거:** "종속회계조직 단위 목록" (양식 번호 BK02-ĐK-TCT)을 초기 세금 등록 서류의 일부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조: 제 7 조 제 1 항 a.2 및 b.2 항목).
- **과다납부세금과 선급부가가치세(VAT)의 이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 종속회계조직이나 분할, 합병, 통합으로 세금코드(TIN)가 종료되면 과다납부세금과 선급부가세는 구조조정 후 모회사나 분할, 합병, 통합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참조: 제 16 조 제 1 항 a.3 항목).

2025 년 2 월 28 일, 정부가 발표한 제 49/2025/NĐ-CP 호 법령에 따른 일시적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기준

2025. 2025 년 2 월 28 일, 정부는 제 49/2025/NĐ-CP 호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이 법령은 일시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적용할 대상을 비롯하여 세금 체납 기준, 체납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 49/2025/NĐ-CP 호 법령은 2025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됩니다.

1. 일시적 출국 금지 조치를 적용할 대상

그룹	대상	세금 체납 기준 (VND)	체납 기간
그룹 1	세금 체납 집행 대상인 개인사업자	5 천만 VND 이상	120 일 초과

그룹	대상	세금 체납 기준 (VND)	체납 기간
그룹 2	세금 체납 집행 대상인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의 법적 대표	5 억 VND 이상	120 일 초과
그룹 3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등록된 주소지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회사의 법적 대표자, 세무 당국의 출국 정지 통지를 받은 후 30 일 내에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한도없음	한도없음
그룹 4	해외로 이주하는 베트남 시민,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시민, 베트남을 떠나는 외국인	한도없음	한도없음

2.일시적 출국 정지 통지

- 그룹 1, 2, 4: 세무 당국은 전자 세금 계좌를 통해 개인에게 통지합니다. 전자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 당국은 공식 웹사이트에 통지사항을 게시합니다.
- 그룹 3: 세무 당국은 등록된 주소에서의 활동 중지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3.일시적 출국 정지 통지 후 세금 의무 이행 기간

- 그룹 1, 2, 3: 세무 당국은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일시적 출국 정지에 대한 공식 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출입국 관리 기관에 송부하여 집행합니다
- 그룹 4: 베트남을 떠나는 개인, 외국인은 출국 전에 모든 세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금액이나 체납 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4. 일시적 출국 정지 취소

세무 당국이 세금 의무를 이행한 것을 확인하면, 출국 정지 취소 통지를 발행하고 이를 출입국 관리 기관에 송부합니다. 출입국 관리 기관은 세무 당국의 통지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출국 정지를 해제합니다.

공식 서한들(OL)

2025 년 2 월 28 일자 국세청 공식 서한 제 916/TCT-CS 호: 시험 생산 제품 판매 수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 인센티브 적용 시점

공식 서한에 따르면, 시험 생산 제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이 고정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으로 기록되는 경우(고정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러한 수익은 프로젝트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금 인센티브 적용 시점(세금 면제 및 세금 감면 기간)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10일자 룡안 세무국에서 발행한 공식 서한 번호 496/TCT-CS는 세관 당국의 세무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수입세에 관한 것입니다.

공식 서한 496에 따르면, 세관 당국의 세무 결정에 따라 납부된 부가가치세(VAT) 금액(사기 또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가 없는 경우)은 전액 매입부가세공제됩니다.

세관 당국이 결정한 수입관세 부과액(사기 또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가 없는 경우)은 법인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 비용에 포함됩니다.

투자 프로젝트 이전 시 수입 물품에 대한 VAT 정책에 대한 지침에 관한 세무총국(GDT)이 발행한 2025년 2월 28일자 공식 서한 번호 137/PCT

이 공식 서한에서는 전체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프로젝트에서 수입 면세 혜택을 받았던 제품에 대해 새로운 수입신고서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생하는 수입관세가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해야 하며, 이는 **2020년 제 219/2013/ND-CP 제 4조 제 1항** 및 **2020년 제 219/2013/TT-BTC 제 6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증빙문서(예: 부가가치세 대상 상품을 생산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확인문서)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내이동하는 내륙 수출 상품에 대한 VAT 정책에 관한 지침에 관한 2024년 12월 17일자 세무국(GDT) 발행 공식 서한 번호 6007/TCT-CS

공식 서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외국 상인이 지정한 수출 가공 기업(EPE)에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내륙 수출로 간주되며, 계약 조건과 은행을 통한 결제가 충족될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무부(MOF)가 보세창고로의 내륙 수출 상품에 대한 VAT 정책에 관한 지침에 관해 발행한
2025 년 2 월 17 일자 공식 서한 번호 1872/BTC-TCT

공식 서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외국 상인이 베트남에 존재하는 보세 창고에 운송하고 상품을 판매 및 배송하는 경우, 이는 해외 조직이나 개인에게 수출되어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수출품, 또는 비과세 구역에서 소비되는 재화판매와는 다르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재화판매들은 0%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안 세무국이 건설 기간 동안 토지 및 인프라 임대 비용에 대해 발행한 2025 년 2 월 12 일자
공식 서한 번호 549/CTLAN-TTHT

공식 서한에 따르면, 건설 기간 중 발생한 토지 임대 비용과 인프라 임대 비용은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이를 장기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건설이 완료되고 사업이 시작된 후에 상각하여 공제비용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최대 3 년 동안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서한의 지침은 회계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 VAS(베트남 회계 기준)에 따라 G&A 비용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공식 서한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 년 2 월 20 일자 푸옌성 세무국에서 발행한 공식 서한 번호 473/CTPHY-TTHT(Facebook 및
Google 광고 비용에 대한 세금 신고)

공식 서한에 따르면,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와 Google Asia Pacific Pte. Ltd.가 발행한 청구서(commercial invoice)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사업자로서 세금 등록을 하고(tax on the Foreign Suppliers' Portal at: etaxvn.gdt.gov.vn 에서 확인가능함), 수익의 일정 %를 납부하는 방식에(직접법방식)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외국 공급업체의 청구서로, 이는

매입부가세공제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광고 비용이 실제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고, 회사 이름, 주소, 세금 코드, 지불 서류 등의 유효한 송장 및 영수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자 롱안무국에서 발행한 발행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는 것에 관한 공식 서한 번호 5772/CTLAN-TTHT

공식 서한에 따르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서 판매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각 거래에 대해 세무 당국 코드가 포함된 전자 invoice 를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2020년 제 123/2020/NĐ-CP 제 13 조).

회사가 비상업적인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2020년 제 96/2015/TT-BTC 제 4 조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며, 구체적인 상담 조언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하기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EOU ACCOUNTING AND CONSULTING COMPANY LIMITED

Hanoi Head office: 10th floor,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Trung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Tel: (+84) 24 3776 7049/50

Saigon branch: 3F, CJ Building 2Bis-4-6 Le Thanh Ton,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